



임신 중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 기간은 정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첫 날부터 시작합니다. DI 혜택은 면허 소지 의료 전문인이 정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증명하는 기간에 근거합니다. DI 청구는 임신 관련 장애,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 없이 출산 예정일 최대 4주 전부터 출산 후 최대 6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왕 절개를 받은 경우에는 출산 후 최대 8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 임신 청구가 끝난 후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 8주의 유급 가족 휴직(PFL)을 이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FL 유대 청구 양식은 최종 DI 혜택 지급과 함께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장애 기간 동안 케어가 필요하면요?

장애 기간 동안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식, 부모, 시부모 혹은 장인과 장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혹은 등록된 동거 동반자가 일을 쉬면서 여러분을 케어하도록 최대 8주의 PFL 혜택을 이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alifornia PFL](http://edd.ca.gov/en/disability/paid-family-leave) (edd.ca.gov/en/disability/paid-family-leave)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애란 무엇인가요?

장애는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혹은 부상입니다. 장애에는 선택적 수술, 임신, 출산, 혹은 관련 의학적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 보험은 무엇인가요?

장애 보험(DI)은 주 장애 보험(SDI)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DI에서는 근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수입을 대체하는 것을 돕습니다. 프로그램의 자금은 SDI 세금 원천징수로 마련됩니다. SDI 프로그램에 지불하였다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급여 명세서에 “CASDI”로 표시).

선택적 보장은 고용주, 자영업자, 일반 파트너가 SDI의 보장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혜택과 자격은 방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지역 [Tax Office](http://edd.ca.gov/office_locator) (edd.ca.gov/office_locator) 혹은 [Disability Insurance Elective Coverage](http://edd.ca.gov/en/Payroll_Taxes/Disability_Insurance_Elective_Coverage) (edd.ca.gov/en/Payroll_Taxes/Disability_Insurance_Elective_Coverage)에서 연간 참여 비용을 알아보세요.

시민권 및 이민 상태는 SDI 혜택을 위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 및 인력 개발국
고용 개발국

이 팜플렛은 일반 정보만을 제공하고, 법률, 규칙, 규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EDD는 평등 기회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이 휴직을 요청하면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및/또는 대체 형식에 대한 요청은 1-866-490-8879(음성)로 전화하여 처리됩니다. TTY 사용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로 전화하세요.



장애 보험 준비

장애 보험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SDI Online](#) (edd.ca.gov/SDI_Online)에서 혜택을 신청합니다. 혹은 종이 청구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Forms and Publications](#) 페이지 (forms.edd.ca.gov/forms).
- 전화 1-800-480-3287.

SDI로 보장되는 캘리포니아주 직원은 1-866-352-7675 번호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 Part A – 청구인 진술 작성을 완료하면 면허 소지 의료 전문인에 Part B - 전문의/일반의 증명을 온라인 혹은 종이 청구 양식으로 완료하게 하세요.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SDI Online에서 Part A가 제출된 후 수여자 번호를 부여합니다. 면허 소지 의료 전문인은 Part B를 완료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수여자 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면허 소지 의료 전문인에게 진찰을 받거나 치료 받기 전 7일보다 더 이전에는 청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3. 온라인 청구나 종이 청구 양식 제출은 장애 발생 후 49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eals](#) (edd.ca.gov/en/Disability/Appeals)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적절하게 작성된 청구서는 2주 동안 처리됩니다.
- *Notice of Computation* (DE 429D) 문서를 발송하여 청구 수신을 확인하고, 혜택 추정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Electronic Benefit Payment (EBP) Notification*(DE 2500E) 문서를 받으시면 본인의 청구가 승인된 것입니다.
-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청구가 거절된다면 연락드릴 것입니다.
- DI 청구의 첫 7일은 비지급 대기 기간입니다. 첫 청구 후 60 일 이내에 같거나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청구되는 경우에는 처음 청구에 연속된 것으로 추가됩니다. 대기 기간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 모든 정보가 수신되고 청구가 승인되면 혜택이 지급됩니다. 혜택 기간은 1회마다 2주입니다. 추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필요한 양식이 발송되니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처리에는 10일이 소요됩니다. 혜택이 주중에 끝난다면 해당 주는 일일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비율은 주당 혜택 금액의 1/7 입니다.
- 혜택 금액은 청구서에 작성하신 지급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내가 받을 혜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구 시작 전 5개월에서 18개월 전 특정 12개월 기간(기준 기간) 동안 급여 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 조건은 기준 기간 동안 수입이 최소 \$300여야 합니다.

[Disability Insurance and Paid Family Leave Calculator](#) (edd.ca.gov/PFL_Calculator)에서 추정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진행 중인 혜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자신의 일반 주급보다 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DI 혜택은 휴가 수당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 혜택에는 최대 금액이 있나요?

최대 금액은 혜택의 주간 급여의 52배이지만, 근무 중 받은 총 기준 기간 급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외: SDI 보장을 선택한 고용주 및 자영업을 하는 개인은 최대 혜택 금액이 주간 급여의 39배입니다.

시설이 위치한 주에서 면허와 허가를 받은 알코올 중독 회복 홈 혹은 약물 금지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거주민에게는 한정된 기간만 혜택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하지만 급성 혹은 만성 알코올 중독 혹은 약물 남용과 관련된 장애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혜택 청구가 거부된다면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 혜택에 영향이 가는 모든 결정의 이유과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 혜택 자격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DI 사무소에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행정법 판사(ALJ) 앞에서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 항소 위원회와 법원에 ALJ의 판결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청구 관련 모든 정보는 법에 허용된 목적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 이상 비밀이 유지됩니다.

DI 연락처

- 영어 1-800-480-3287.
- 스페인어 1-866-658-8846.
- 미국 우편 주소 PO Box 13140, Sacramento, CA 95813-3140. 현재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DI 사무소에도 보내도 됩니다. 참고: 이 PO Box에는 청구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 TTY는 (TTY 사용자 전용) 1-800-563-2441입니다.
-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DI Offices](#) (edd.ca.gov/office_locator) 에서 위치를 찾아보세요.

장애가 영구적이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gov) 혹은 전화번호 1-800-772-1213 (TTY 1-800-325-07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